

9. 農地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5,229號 1996. 12. 31

주요 골자

- 가. 숙박시설·호화음식점·공동주택 등을 농지 가운데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농지전용허용면적을 조정함(영 제49조 제3항.)
-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는 농지전용 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조정함(영 제72조 제1항·제2항)
- 다.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 등을 농지전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 라.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별공장을 계획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면제함(영 별표 2 제8호의 2).
- 마.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 이상 활용하여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면제함(영 별표 2 제15호의 2).

개정 이유

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쌀등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계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5조 제1호 중 “1천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며, 동조 제3호 중 “숙박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로,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1만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37조 제2항 제1호 중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

는지의 여부”를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제49조 제3항 제1호 중 “1만제곱미터”를 “7천500제곱미터”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기숙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7호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

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설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일반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3조 제2항 중 “부과명세서등을”을 “관련서류를”로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본문중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제72조 제1항에 제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6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제72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 2”로 하고, 동항 제3호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 2”로 하며, 동항 제4호 가목 중 “제1호”를 “제1호·제1호의 2”로 한다.

제72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제2호”로 하고, 동호 가목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며, 동호 나목 중 “1만제곱미터”를 “6천제곱미터”로 한다.

제75조 제2항 중 “관할하는”을 “관할하거나 당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시설의 범위란중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3호의 시설의 범위란중 “제34조”를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로, 규모란중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

터)”를 “7천제곱미터”로 하며, 제6호의 시설의 범위란중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규모란중 “제한 없음(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을 “제한 없음”으로 하고, 제8호의 시설의 범위란중 “양어장”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으로, 규모란중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를 “7천제곱미터”로 하며, 제9호의 시설의 범위란중 “제3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8호의 시설구분란중 “농공단지”를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로, 감면비율란의 농업진흥지역안란중 “100”을 “0”으로 하고, 동표에 제8호의 2란 및 제15호의 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	---	-----

15의 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의 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

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1항 제19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50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주택회보